

社會保障의 國際的 最低基準

金辰

우리들人間은 社會生活을 하고 있다。社會生活을 營爲함에 있어서 여러 社會的 價值 即 啓蒙、尊敬、權力、愛情等을 追求한다。그러나 먼저 人間의 基本的 인 生活條件인 衣・食・住에 對한 保障을 必要로 하여 疾病、廢疾에 對備한 醫療의 施設이 있어야 하겠다。社會保障立法은 이와 같은 人間으로서、또한 國家의 國民으로서의 最低生活을 國家가 保障하여야 하는當然히 規制되어야 할 必要不可缺의 것이다。個人의 力量의 弊等、努力의 不足으로 因하여 生活에 威脅을 받거나 或은 높은 水準의 生活을 營爲못하는 것은 且置하드라도 勤勞할 意志와 能力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近代產業構造의 必然的 인 結果로서 失業者가 되었다든가 疾病、傷病、老齡、窮乏 또는 所得能力이 없는 寡婦、孤兒에 對해서 國家가 이를 그대로 放置한다는 것은 深刻한 社會的不安을 招來하는 것이다。

社會保障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制度化하기는 一九三五年 北美合衆國에서였는데 (1) 其後諸國에서는 近代國家의 基本的 인 施策의 하나로서 이 制度에 對한 研究가 進行되어 훌륭한 效果를 거두고 있다(2)。그리하여 오늘날 이 分野의 學問을 研究하고 있는 學者들間에는 大體로 다음과 같은 것에 合意를 보고 있

는 것 같다. 社會保障의 核心部는 어니까지나 窮乏의 防止를 目的으로 삼고 「社會保險」(國民保險)(3)과 窮乏의 救護를 主眼으로 하는 「公的扶助」(國家扶助)(4) 또는 이兩制度의 統合制에 있다고 한다。

國家의 機能이 社會的 經濟的 領域에 擴大하여 가는 現代國家에 있어서는 社會保障이란 制度가 크게 크 르一즈업되자 있다. 그러나 尚今 大韓民國에서는 여기에 對한立法措置가殆無하여 設或微微한立法 이(5) 있다고 하여도 그 實效性을 充分히發揮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本稿의 目的是 이와 같은 社會保障制度에 對한研究와 그運動을 國際的인 規模에서 向上시키기 위하여 一九五二年 國際勞動機構(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第三十五回 總會에서 採擇된 「社會保障의 最低基準協定」(Convention Concerning Minimum Standards of Social Security)에 紹介하고자 하는데 있다(6)。

再言하 바도 없이 本協定은 第二次大戰以後 廣範圍하게 展開되어 온 人間의 尊嚴性을 찾자는 國際的인運動의 結實이요 또한 國民 特히 社會的 弱者에게 人間다운 生活을 保障하는 文化國家의 實을發揮할려고 하는 國內의 인努力의 象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大韓民國은 I·L·O(7)의會員國은 아니 다. 그러나 國際的으로日益漸高해 가는 人間의 尊嚴性을感知할 수 있는 이점, 이와 같은 國際的인 規準을 檢討해 보는 것도 意義가 있는 것이라思料된다(8)。況况 大韓民國憲法上 社會保障制度가 具現되어 있느가를 檢討하고 「社會保障의 最低基準協定」의 作成過程, 輪廓, 本協定의 翻譯의順序로 볼수를 들여 보기로 한다.

大韓民國憲法 前文에서는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라고 明示하여 모든 國민이 最低限度의 文化生活을 營爲할 수 있도록 國家가 努力할 것을 明言하고 있다。 그리하여 憲法 第五條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은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하여 이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다」고 規定하여 公共福利를 위하여 國家의 可能한 統制 干涉을 明示하고 있으며 大韓民國의 經濟秩序의 基本原理를 밝힌 憲法 第八十四條는 그一項에서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需要를 充足하게 할 수 있는 社會正義의 實現을 基本으로 삼는다고 規定하여 文化國家를 指向하고 國民各人の 生存權을 保障함으로써 이른바 均等社會를 이루는데 있음을 밝이고 있다。

以上 論한 바와 같은 精神은 憲法 第二章에 具現되어 特히 第十九條는 老齡、疾病、其他 勤勞能力喪失者에 對한 國家의 保護義務를 宣明하게 되었다。

憲法第十九條는 「老齡、疾病、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고 規定하였다。 勤勞能力 없는 者에 對한 社會保障制度를 規定한 本條에 依하면 ㄱ、勤勞能力의 喪失者라야 한다。 그 喪失의 原因은 老齡、戰傷、疾病、其他 如何한 事由를 不問하고 幼兒、不具者와 같이 當初부터 勤勞能力 없는 者도 包含된다。 ㄴ、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라야 한다。 따라서 勤勞能力 없는 者라 할지라도 自己所有資產으로 能히 生活할 수 있거나 또는 扶養할 수 있는 者가 있어生存에 支障이 없으면 保障을 받을 수 없다。 ㄷ、保障의 方法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따라서 憲法第十九條는 勤勞能力 없는 國民이 受益할 수 있는 權利를 法律制定에 委任하고 있으므로

社會保障에 對한 法律이 制定되어야만 國民은 保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換言하면 具體的으로 保護를 받을 사람의 範圍、그 要件、또 保護의 尺度等에 關해서는 法律의 制定에 留保하고 있으므로 本條에 依하여 直接 國民이 國家에 對해서 受益權을 要請할 수는 없다。

人間의 尊嚴性을 希求하는 現代先進各國家에서는 以上에서 論한 社會保障立法을 定立할 努力を 아끼지 않고 있는(9) 이점, 所謂 프로그램의 性格을 비운 受益權, 俗로 말로는 「빛 좋은 개살구」式으로 憲法 第十九條에 明示된 社會保障條項을 放置해 둘 것인가? 에프스테인(A. Epstein)도 指摘한 바와 같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정원에서 追放된以後 「不安定」(insecurity)이 人類의 禍가 되었다。人類의 進步의 차운은 保障(Security)을 獲得하기 위한 戰爭이었다……。社會가 그 構成員에게 供與하는 保障의 程度만이 社會進步의 重要한 테스트이다」(10) 하였지만 國家가 國民의 生存權을 保障하기 위하여 設定한 制度가 어찌 한 것인가에 따라 그 나라의 文化的 尺度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社會保障制度라稱해지는 것은 오늘날 世界의 大多數國에서 이미 實施되어 있지만 各國의 國內事情에 따라서 社會保障의 方法、內容을 달리 한다(11)。그러나 人間의 尊嚴性이라 하는 國境을 超越한 價值를 追求하려는 國際的인 努力은 社會保障의 國際協定의 締結에 基礎를 둔 國際社會保障策의樹立을 要望하게 되었다。本項에서 國際勞動機構가 最近 社會保障問題를 어떻게 取扱하였는가를 考察해 보기로 하고 順序上 國際勞動機構, 俗稱 I·L·O란 어떤 機關인가를 論해 보기로 한다。

I · L · O는 七十餘個國의 會員國으로構成된 國際機構이며 政府、企業主、勞動團體의 代表에 依하여 民主的으로 運營된다。本機構는 西紀一九一九年에 創設되어 西紀一九四六年 國際聯合의 專門機關이 되었다。그것의 目的是 社會正義의 確固한 基礎에 立脚한 不和를 具現하자는 것이다。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會員國에 있어서의 勞動、社會狀態에 關한 事實을 蒐集·交換하여 國際的最低基準을 세우고 會員國內에서 그것이 어떻게 適用되는가를 監督한다。I · L · O는 總會(General Conference)、理事會(Governing Body) 및 國際勞動局(International Labour Office)의 三機關으로 成立되어 있다。

總會는 I · L · O의 最高機關이며 會員國에서는 例年の總會에 政府代表二名、企業主代表一名、勞動者代表一名을 派遣한다。그러나 各代表는 獨自의로 發言投票한다。企業主代表 및 勞動者代表는 會員國內에 있어서의 가장 代表의 團體에 依하여 選出되어야 한다。總會의 機能은 勞動 및 社會問題에 關한 國際的最低基準을樹立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基準은 國際勞動協定(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乃至建議(Recommendations)의 形式을 取한다(12)。이것을 採擇함에 있어서는 總會出席者の三分之二以上的賛成을 必要로 한다。總會에서 採擇된 協定은 自動의로 會員國에 對해서拘束力を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各國政府는 總會가 採擇한 基準을 批准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國會에 提議할義務가 있다。萬若協定이 批准되면 政府는 그 協定을 國內에서 어떻게 適用되고 있는가를 I · L · O에 每年 報告하여야 하며、 가장 代表의 勞使의 團體에 對해서도 同報告의 寫本을 提供하지 않으면 아니된다。建議는 協定과 달라서 會員國의 批准을 必要로 하지 아니하지만 會員國의 政府는 그것에 對해서 어떠한 效果를 賦與하여야 좋은지를 考慮할義務가 있으며 定期的으로 그것을 報告할義務가 있다。

理事會는 政府代表 十六名、勞動者代表 八名、企業主代表 八名으로써 成立된 執行機關이다。政府代表 十六名中 半數는 主要產業國인 八個國이 而 나머지 半數는 選舉에 依한다。理事會의 主要機能은 國際勞動局이 取扱하는 事務의 一般的的 監督、政策의 樹立、各種委員會의 管理、豫算의 編成、國際勞動局의 事務總長(Director General)의 任命 等이다。

勞動局은 事務局의 情報의 中心地이다。本局은 國籍을 落實하는 專門家들로서 構成되어 있으며 그들 的 知識、經驗、勸告를 會員國에서 採用할 수 있다(13)。

以上論한 바와 같은 體制를 갖춘 I·L·O를 通해서 國際의 依 社會保障이 問題된 것이라 西紀一九四四年五月 『국제劳工의 歷史의』 第二十六回 國際勞動總會에서 採擇된 「국제劳工宣言」(The Declaration of Philadelphia)、「所得保障에 關한 建議」(Recommendation Concerning Income Security)와 「醫療에 關한 勸告」(Recommendation Concerning Medical Care) 등서 찾을 수 있다。第一次大戰의 戰火 속에 被害이 벌린 人間의 尊嚴性을 확보하되 社本宣言에 그 속에서 「保護할 必要로 하되 모든 사람에게 기본的所得과 包括의 痘瘡(comprehensive medical care)을 賦與하기 위하의 社會保障策을 擴張하니」 것인 I·L·O의 嚴肅한義務라는 것을 明示하고 있다(14)。「所得保障에 關한 建議」는 戰後 各國에서 創設된 所得保障制度의 範圍와 內容에 關한 順가지 原則을 세운 것인다。그리하여 I·L·O의 會員國이 依한ところ 所得保障制度의 保護의 適用範圍를 漸次 擴張시킴으로써 一般的的 事故에 따라 農民 및 自營者를 包含한 모든 労動者가 所得을喪失한 境遇에는 그 家族의 生活費를 充足 할 수 있는 품에는 적어도 労動者와 그의 家族에게 最低生活費用만은 반드시 確保할 수 있는 對策을 講究해 주자는 것이다。『醫療에 關한 勸告』도 「所得保障에 關한

「勸告」와 大體로 同一한 目的을 가진 것으로서 各國이 醫療保護施設을 發達시킴에 있어서 遵守하지 않으면 아니될 一般基準을 세워서 各國으로 하여금 早速히 그 基準에 到達시킬 것을 建議할려고 한 것이다。西紀一九四四年五月의 「파라델피아宣言」所得保障建議 및 醫療建議가 決議된 후、八個年이 經過되어 西紀一九五二年六月 I·L·O는 第三十五回總會에서 社會保障의 最低基準에 關한 協定案을 審議하여 그것을 協定形式으로 採擇하였다。 이로써 社會保障에 關한 國際條約、그리고 社會保障의 最低基準에 關한 協定이 成立된 것이다(15)。

四

本協定의 內容은相當히 範圍가 넓어 十五編、八十七個條로 成立되어 있다。一般規定、定期的 支拂金의 計算、國籍을 가리지 아니한 住民에 對한 平等待遇、共通規定、雜則、經過規定等을 除外한 六十餘個條(九編)가 醫療、疾病給付、失業給付、老齡給付、業務災害給付、家族給付、出產給付、廢疾給付 및 遺族給付의 廣範圍한 部面에 걸친 保護領域을 設定하였다。本協定은 最低基準이란 名稱을 逸脫해서 實質的으론 二重基準을 세우고 있다。이것은 會員國間에 存在하는 經濟能力を 考慮한 點에서 發生한 것으로 高度로 發達한 社會保障制度를 實施하고 있는 會員國이 있는 反面、想像할 수 없는 程度로 낮은 水準을 가지고 있는 會員國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어느 會員國이든 本協定을 容易하게 批准할 수 있게 한 것이다。그리고 會員國에서 運營하고 있는 社會保障의 方法에 差異가 있기 때문에 各編의 適用範圍가 三次元的乃至四次元의 으로 되어 있다。各編의 內容은 大體로 保護된 事故(Contingencies)、被保護者의 範圍、保護의 範圍、給付

나受給資格의條件、給付의支給期間、給付率等으로되어 있다。具體的인內容에關해서는當該條文을
參照하면自明할것이나、特記해둘것은上記九編門中失業給付、老齡給付、業務災害給付、廢疾給付 및
遺族給付中의一部門을包含한三部門에對해서會員國이批准하지않으면 아니되게되었다。

五

國際勞動機構의總會는國際勞動局의理事會에依하여 주네브에서召集되고 또한一九五二年六月四日에
第三五回會期로서會合하게

本會期의議事日程의第五議題속에包含되어 있는社會保障의最低基準에關한諸提案의採擇을決定
하고

이와같은提案이國際條約의形式에따르지않으면아니될것을決定하였으므로、一九五二年的社會保
障(最低基準)協定으로서引用할수있는다음과같은協定을一九五二年六月二十八日에採擇한다。

第一編 一般規定

第一條 一 本條約에 있어서

「、「所定의」이라함은國內의法律 또는規則에依하여 또는이것에基礎를두어서決定된것을意味한다。
」、「居住라함은會員國의領土內의通常의居住를意味하며、또한「住民」이라함은會員國의領土內의通常居住
하는者를意味한다。

드、「妻」라 함은, 夫에 대하여 扶養되고 있는 妻을 意味한다。

己、「寡婦」라 함은, 그夫의 死亡當時, 夫에 대하여 扶養되어 있던 女子를 意味한다。

口、「子」라 함은, 別途로 定해지는 學校卒業年齡未滿 또는十五歲未滿의 子를 意味한다。

巳、「資格期間」이라 함은, 別途로 定해지는 醫出期間, 履儲期間 또는 居住期間 또는 이것과의 相互聯關係를 意味한다。

二 第十條, 第三十四條 및 第四十九條에서 「給付」라 함은, 醫療의 形式을 取하는 直接給付와 關係著가 負擔한 費用의 應還인 間接給付와의二者中一方을 意味한다。

第二條 本協定의 應用을 받는各會員國은

「、다음의 諸編을 반드시 實施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I. 第一編

「、第十四編, 第四編, 第五編, 第六編, 第九編 및 第十編 中에서 적어도 하編을 包含하여 第一編, 第三編, 第四編, 第五編,

第六編, 第七編, 第八編, 第九編 및 第十編 中의 적어도 三個의 編

II. 第十一編, 第十二編 및 第十三編關係規定 및

III. 第十四編

「、批准함에 있어서 第二編乃至第十編에 對해서는 本條約의 義務를 受諾하는가를 明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三條 一 經濟 및 醫療施設이 充分히 發達해 있지 아니한 會員國은 權限이 있는 機關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期間, 그批准에添付하는 宣言에 依해서 다음諸條 即第九條 己、第十二條(二)、第十五條 己、第十八條(二)、第二十一條 己、第二十七條 己、第三十三條 己、第三十四條(三)、第四十一條 己、第四十八條 己、第五十五條 己 및 第六十條 己,에 規定하는 暫定의例外規定을 利用할 수 있다。

二 本條의 第一項에 따라 宣言을 한 會員國은 國際勞動機構憲章 第十二條에 依해서 提出하는 本條約의 應用에 한 年次報告中에 自國이 利用하고 있는 各例外規定에 對해서 다음事項에 關한 說明을 包含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例外規定을 採用할 理由가 存續하여 있다는 것 또는

一、當該例外規定을 採用할 權利를 一定期間以後 放棄하는 것。

第四條 一 本協定을 批准한 會員國은 其後 그것의 批准에 있어서 아직 明記하지 아니한 第二編乃至第十編中 하나以上의 編에 對해서 本條約의義務를 受諾하는 뜻을 國際勞動事務總局長에게 通告할 수 있다.

二 本條의 第一項에 明示된 約束은 批准의 不可分의 一編으로 看做되어 通告의 旨부터 批准과 同一한 效力を 가진다.

第五條 會員國은 批准에 依해서 適用하여야 할 本條約의 第二編乃至 第十編中의 어느 編의 實施上 住民의 特定比率以上을 構成하는 所定의 階層의 사람을 保護하지 않으면 아니될 境遇에는 그 會員國은 約束함에 앞서 그 比率에 違했다는 것을 確認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六條 會員國은 本條約의 第二編、第三編、第四編、第五編、第八編(但 醫療에 關해서만)、第九編 또는 第十編을 實施함에 있어서는 비록 國內의 法律 또는 規則에 依해서 被保護者에게 強制的인 것이 아니라 해도 다음과 같은 保險의 方法으로써 行해지는 保護를 考慮에 둘 수 있다.

「、公的機關이 監督하거나 또는 所定의 基準에 따라서 使用者 및 勞動者가 共同으로 運營하여

「、熟練工의所得을 넘지 아니하는所得者의 大部分에게 適用되어

二、適當한境遇에는 다른 形式의 保護와 더불어 本協定의 關係規定을 實施하는 것。

第二編 醫療

第七條 本協定의 本編의 適用을 받는 會員國은 本編의 다음 諸條에 따라서豫防的 또는 治療的性質의 醫療를 必要로 하는 狀態에 있는 被保護者에 對해서 給付의 支給을 確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八條 適用을 받을 事故는 모든 病的 狀態(그것의 原因의 如何를 不問) 및 妊娠、分娩 및 그것의 結果로 한다.

第九條 被保護者는 下記者로 한다.

「、모든 雇傭者の 五十%以上을構成하는 所定의 階層의 雇傭者 및 그들의 妻、子 또는

「、모든 住民의 二十%以上을構成하는 所定의 階層의 經濟的稼動人口 및 그들의 妻、子 또는

二、모든 住民의 五十%以上을構成하는 所定의 階層의 住民 또는

근、第三條에 따라 행해진宣言이 효력을 가지는境遇에는二十人以上을 使用하는 工業의 作業場에 있어서 모든 被用者의 五十分%以上을 構成하는 所定의 階層의 被用者 및 그들의 妻、子。

第十條

一 紙付는 적어도 다음의 것을 包含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病的狀態의境遇에는

I、一般醫師의治療(往診을 包含함)

II、入院患者 및 外來患者를 위한 病院에 있어서의 專門醫師의治療、病院外에서 행해지는 이와 같은 專門醫師의治療

III、醫師其他資格이 있는者가處方하는 藥品、

IV、必要한境遇의 入院

「、妊娠、分娩 및 그것의結果의境遇에 있어서는

I、醫師 또는 資格이 있는 助產婦의 어느者에依한 產前、分娩 및 產後의 手當、

II、必要한境遇의 入院

二 受給者 또는 그의 扶養者에게는受給者가病的狀態에 關해서 받는醫療費를 分擔시킬 수 있다。以上的費用分擔에 關한規則은 過重한 負擔을避할 수 있도록立案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三 本條에 따라供與되는給付는被保護者の健康 및 그들의勞動能力、個人의需要를充足시키는 ability을維持、回復시키거나 또는改善시키기 위해서支給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四 紙付를 管理하는機關 또는官廳은公共의機關 또는公共의機關이承認하는他團體가供與하는一般保護施設의被保護者에依한利用을適當하다고生覺되는方法으로써獎勵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十一條 第十條의 紙付는適用을 받는事故가發生한境遇에濫用을避하기 위하여必要하다고認定되는資格期間을滿了한被保護者에게 또는 그의扶養者에對해서 적어도確保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十二條 一 第十條의 紙付는適用을 받는事故의全期間에亘해서支給되지 않으면 아니된다。但病的狀態에對해

서는 給付의期間을一件에二十六週로制限할수있다. 그러나 給付는 疾病給付가繼續해서支拂되고있는동안은停止해서는 아니된다. 長期의療養이必要하다고認定되는所定의疾病에對해서는前記의制限을延長하는規定을設定하지않으면아니된다.

二 第三條에따라서行해진宣言이效力을가지는境遇에는給付의期間은一件에對해서十三週로제한할수있다.

第三編 疾病給付

第十三條 本條의本編의適用을받을各會員國은本編의다음諸條에따라서被保護者에對해서疾病給付의支給을確保하지않으면아니된다.

第十四條 適用을받을事故는國內의法律또는規則이定하는데따라서病的狀態에起因하여所得의停止를隨伴하는勞動不能이다.

第十五條 被保護者は다음과같은者로한다.

「、모든雇傭者の五十%以上을構成하는所定의階層의雇傭者 또는

「、모든住民의二十%以上을構成하는所定의階層의經濟的稼動人口 또는

「、모든住民但事故期間中의그들의資產이第六十七條의要件에合致하는方法으로써定해진限度를넘지아니하는者、또는

「、第三條에따라서行해진宣言이effort을가지는境遇에는二十人以上을使用하는工場이어떨때까지오에있어서모

든被用者的五十%以上을構成하는所定의階層의被用者。

第十六條 一 雇傭者の階層또는經濟的稼動人口의階層이保護되는境遇에는給付는第六十五條의要件 또는第六

十六條의要件의어느것에合致하는方法으로計算되는定期의支拂金이아니면아니된다.

二 事故期間中の資產이所定의限度를넘지아니하는모든住民이保護되는境遇에는給付는第六十七條의要件에合致하는方法으로計算되는定期의支拂金이아니면아니된다.

第十七條 第十六條의給付는適用을받을事故가發生한境遇에濫用을避하기위하여必要하다고認定되는資格期

間이 滿了한 被保護者에 對해서 確保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十八條 一 第十六條의 紙付는 適用할 故事의 全期間에 亘해서 支給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但 紙付의 期間은 疾病一件에 對해서 二十六週로 制限할 수 있으며 이 境遇에 있어서는 所得停止의 最初의 三日間에 亘해서는 紙付를 支給할 필요가 없다.

二 第三條에 따라서 行해진 宣言이 效力を 가지는 境遇에는 紙付의 期間은 다음의 期間으로 制限할 수 있다.

一、一年間에 疾病給付가 支給되는 總日數가 그一年間에 있어서 被保護者の 平均數의 十倍以上이 되는 期間,
二、疾病一年에 對해서 十三週, 이 境遇에 있어서는 所得停止의 最初의 三日間에 亘해서는 紙付를 支給할 필요가 없다.

第四編 失業給付

第十九條 本協定의 本編의 適用을 받은 各會員國은 本編의 諸條에 따라서 被保護者에 對해서 失業給付의 支給을 確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二十條 適用을 받는 事故는 國內의 法律 또는 規則이 定하는데 따라 勞動의 能力 및 適應性을 가진 被保護者が 適當한 職業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生기는所得의 停止이다.

第二十一條 被保護者は 다음과 같은者이다.

一、모든 雇傭者の 五十% 이상을 構成하는 所定의 階層의 雇傭者 또는
二、모든 住民但 事故期間中에 있어서 資產이 第六十七條의 要件에 合致하는 方法으로서 定해진 限度를 넘지 아니하는
者, 또는

三、第三條에 따르면 行해진 宣言이 效力を 가지는 境遇에는 二十人以上을 使用하는 工業의 作業場에 있는 모든 雇傭者の 五十% 이상을 構成하는 所定의 階層의 被用者。

第二十二條 一 雇傭자의 階層이 保護되는 境遇에는 紙付는 第六十五條의 要件 또는 第六十六條의 要件의 어느 것에

合致하는 方法으로써 計算되는 定期的 支拂金이 아니면 아니된다。

二 事故期間中의 資產이 所定의 限度를 넘지 아니하는 모든 住民이 保護되는 時遇에는 給付는 第六十七條의 要件에 合致하는 方法으로써 計算되는 定期的 支拂金이 아니면 아니된다。

第二十三條 第二十二條의 給付는 適用을 받는 事故가 發生한 時遇에 濫用을 避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資格期間을 滿了한 被保護者에 對해서는 적어도 確保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二十四條 一 第二十二條의 給付는 事故의 全期間에 亘해서 支給되지 않으면 아니된다。但 給付의 期間은 다음의 期間으로 制限할 수 있다。

「、雇傭者の 階層이 保護되는 時遇에는 十二個月의 期間中의 十三週 또는

」、事故期間中의 資產이 所定의 限度를 넘지 아니하는 모든 住民이 保護되는 時遇에는 十二個月의 期間中의 二十一週。

二 給付의 期間이 韓出期間의 기리미¹ 所定의 期間內에 이미 配受된 給付에 따라서 變更하는 뜻을 國內의 法律 또는 規則이 規定하고 있는 時遇에는 第一項(一)號의 規定은 給付의 平均期間이 十二個月의 期間中의 적어도 十三週일 때에는 充足된 것으로 看做한다。

三 給付는 所得停止一件에 對해서 最初의 七日의 待期期間中은 支給할 必要가 없다。이 時遇에 所定의 期間을 넘지 아니하는 一時的 就業의 前後에 있어서의 失業日數는 同一의 所得停止事案의 一部로서 計算한다。

四 季節的 労動者에 對해서는 給付의 期間 및 待期期間은 그의 雇傭條件에 適合시킬 수 있다。

第五編 老齡給付

第二十五條 本協定의 本編의 適用을 받는 各會員國은 本編의 諸條에 따라서 被保護者에 對해서 老齡給付의 支給을 確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二十六條 一 適用을 받는 事故는 所定의 年齡以上의 生存으로 한다。

二 所定의 年齡이라 함은 六十五歲 또는 權限이 있는 機關이 當該國의 高齡者の 勞動能力을 適當히 考慮해서 定하는 高齡을 넘어서는 아니되는 年齡을 말한다。

三 國內의 法律 또는 法令에 依하면 紙付를 받을 資格을 가진 者가 所定의 有償의 活動에 從事하고 있는 境遇에는 本 紙付를 停止할 수 있다는 趨旨 紙付가 酒出制의 境遇에 受益者의 所得이 所定額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紙付를 減額할 수 있으며、 紙付가 無酒出制의 境遇에 受益者의 所得 또는 受益者의 其他資產 또는 그들의 合計가 所定額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紙付를 減額할 수 있다는 趨旨를 規定할 수 있다。

第二十七條 被保護者는 다음과 같은者이다.

一、 모든 雇傭者の 五十%以上을 構成하는 所定의 階層의 雇傭者 또는

二、 모든 住民의 二十%以上을 構成하는 所定의 階層의 經濟的 移動人口 또는

三、 모든 住民但 事故期間中에 있어서 資產이 第六十七條의 要件에 合致하는 方法으로서 定해진 限度를 넘지 아니하는 것 또는

四、 第三條에 따라서 行해진 宣言이 效力を 가지는 境遇에는 二十人以上을 使用하는 工業的 作業場에 있어서 모든 雇傭者の 五十%以上을 構成하는 所定의 階層의 被用者

第二十八條 紙付는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서 計算되는 定期的 支拂金으로 한다.

一、 雇傭者の 階層 또는 經濟的 移動人口의 階層이 保護되는 境遇에는 第六十五條의 要件 또는 第六十六條의 要件의 어느 것에 合致하는 方法。

二、 事故期間中の 資產이 所定의 限度를 넘지 아니하는 모든 住民이 保護되는 境遇에는 第六十七條의 要件에 合致하는 方法。

第二十九條 一 第二十八條의 紙付는 適用을 받는 事故가 發生한 境遇에 적어도 다음과 같은 者에 對해서 確保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二、 酿出 또는 雇傭에 對해서는 三十年、 居住에 對해서는 二十年의 資格期間을 事故發生前에 所定의 規則에 따라서

滿了한 被保護者 또는

」、經濟的活動에 從事하는 모든 사람이 原則의 으로 保護되는境遇에는 酒出金에 關한 所定資格期間을 滿了한 被保護者。이境遇에 그者에 關해서 그者가 勞動年齡이 있었던 동안에 所定의 年平均回數의 酒出金이 支拂되지 않음을 要한다。

二 第一項의 給付가 酒出 또는 雇傭에 對한 最少期間의 滿了를 條件으로 하는境遇에는 減額給付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者에 對해서 確保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 酒出 또는 雇傭에 對한十五년의 資格을 事故發生前에 所定의 規則에 따라서 滿了한 被保護者 또는

」、經濟活動에 從事하는 모든 사람이 原則의 으로 保護되는境遇에는 酒出金에 對한 所定資格期間을 滿了한 被保護者。이와 같은境遇에는 그者에 關해서 그者가 勞動年齡에 있었던 동안에 本條의 第一項(一)號에 따라 定해진 年平均回數의 半分의 回數의 酒出金이 支拂되었음을 必要로 한다。

三 第十一編의 要件에 따라서 關係標準受給者에 關한 編部의 附表에掲載된 百分率보다 十만 낮은 百分率로써 計算된 酒出 또는 雇傭에 對해서는 十年、居住에 對해서는 五年을 所定의 規則에 따라서 滿了한 被保護者에 對해서 적어도 確保되는境遇에는 本條의 第一項의 要件은 充足된 것으로 看做된다。

四 減算한 百分率에 對應하는 給付에 關한 資格期間이 酒出 또는 雇用에 對한 것의 十年을 넘지만 酒出 또는 雇用에 對한 것의 三十年에 達하지 못하는境遇에는 第十一部의 附表에掲載된 百分率에 對한 比例的 減算을 行할 수 있다. 以上의 資格期間이 十五年을 넘을 때에는 減額한 給付를 本條의 第二項에 따라서 支拂할 수 있다.

五 本條第一項、第三項 또는 第四項에掲載된 給付가 酒出 또는 雇傭에 關한 最少期間의 滿了를 條件으로 하는境遇에는 本條의 本編의 適用에 關係가 있는 規定이 施行되었을 때에 高齡이 였기 때문에 本條의 第二項에 따라 定해진條件을 充足시키지 못한 被保護者에 對해서는 減額한 給付를 所定의 條件으로써 支拂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但右者에 對해서 本條의 第一項、第三項 또는 第四項의 規定에 依한 給付가 通常의 年齡보다 高齡으로서 確保된境遇를 除한다。

第三十條 第二十八條 및 第二十九條의 給付는 事故의 全期間에亘해서 支給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六編 業務災害給付

第三十一條 本協定의 本編의 適用을 받는 各會員國은 本編의 諸條에 따라서 被保護者에 對한 業務災害給付의 支給을 確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三十二條 適用을 받는 事故는 業務의 結果로서 生기는 災害 또는 所定의 疾病에 起因하는 다음과 같은 境遇로 한다.

一、 病的狀態

二、 國內의 法律規則이 定하는 것에 따라서 그 狀態의 結果로서 生겨 所得의 停止를 包含한 勞動不能

三、 所得能力의 全面的喪失 或은 所定의 程度를 넘는 所得能力의 一部分的喪失(但、 全面的 또는 一部分的喪失이 永久의인 것)이 되는 蓋然性이 있는 境遇로 한다)、 또는 身體機能의相當한 喪失

四、 扶養者의 死亡의 結果로서 寡婦 또는 子가 입을 扶養의 喪失、 但 寡婦에 對해서는 給付를 받을 權利는 寡婦가 自活할 수 없다는 것、 國內의 法律 또는 規則에 따라서 推定되는 것을 條件으로 한다.

第三十三條 被保護者는 다음과 같은 者

一、 모든 雇傭者の 五十%以上 을 構成하는 所定의 階層의 雇傭者、 扶養者の 死亡에 關한 給付에 對해서는 그의 妻 및 子 또는

二、 第三條에 따라서 行해진宣言이 效力を 가지는 境遇에는 二十人以上을 使用하는 工業的 作業場에 있어서 모든 雇傭者の 五十%以上을 構成하는 所定의 階層의 被用者、 扶養者の 死亡에 關한 給付에 對해서는 그의 妻子。

第三十四條 一 病的狀態에 關해서는 給付는 本條의 第二項 및 第三項에 揭載된 醫療로 한다。

二 醫療는 다음과 같은 것을 包含한다。

一、 一般醫師 및 專門醫師의 入院患者의 治療 및 外來患者의 治療(住診을 包含함)

二、 齒科治療

三、 家庭、 病院 또는 其他 醫療施設에 있어서의 療養

己、病院、患者療養所、세나토리움 또는 其他의 醫療施設에 있어서의 保養

口、齒科醫療品、藥品 및 其他 内科 또는 外科用醫療品(補裝具 및 그것의 修理를 包含함)、眼鏡
及、醫業에 關聯이 있다고 法律上 認定되는 다른 職業에 從事하는 者가 醫師 또는 齒科醫師의 監督下에 行하는 治療。

三 第三條에 따라서 行해진 宣言이 效力을 가지는 境遇에는 治療는 적어도 다음의 것을 包含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一般醫師治療(在診을 包含함)

」、入院患者 및 外來患者를 위한 病院에서의 專門醫師의 治療、病院外에서 行해지는 專門醫師의 治療

二、醫師 其他 資格이 있는 者가 處方하는 重要한 藥品

己、必要한 境遇의 入院。

四 前諸項에 따르지 定해진 醫療는 被保護者の 健康、그者的 労動能力 및個人的 需要를 充足하는 能力を維持、回復、改善시키기 위하여 賦與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三十五條 一 醫療를 管理하는 機關 또는 官廳은 身體障礙者를 過職에再次 就職시키기 위하여 一般職業轉換施設과 恒時 協力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二 國內의 法律 또는 規則은 身體障碍者의 職業轉換을 위한 措置를 取할 權限을 機關 또는 官廳(第一項의)에 賦與할 수 있다.

第三十六條 一 勞動不能、永久의인 것�이 될 蓋然性이 있는 所得能力의 全面的喪失、身體機能의相當한喪失、扶養者의 死亡에 關한 給付는 第六十五條의 要件、至七 第六十六條의 要件의 어느 것에 合致하는 方法으로 計算되는 定期의 支拂金이 아니면 아니된다。

二 永久의인 것이 될 蓋然性이 있는 所得能力의 一部喪失、身體機能의相當한喪失에 對해서는 支拂하여야 할 給付는 所得能力의 全面的喪失、또는 身體機能의相當한喪失에 對해서 定해지는 定期의 支拂金의適當한 比率로서 定해지는 定期의 支拂金이 아니면 아니된다。

三 定期의 支拂金은 다음과 같은 境遇에 一時金으로 振替할 수 있다。

그、不能의 程度가 輕微한 境遇 또는

나、一時金이 適當히 利用된다는 것을 權限 있는 機關이 認定한 境遇。

第三十七條 第三十四條 및 第二十六條의 紹付는 適用을 받을 事故가 發生한 境遇에 災害(傷害가 災害에 起因한 境遇)의
當時 또는 疾病(傷害가 疾病에 起因하는 境遇)에 걸릴當時에 會員國의 領土內에서 雇傭되어 있던 被保護者 및 扶養者
의 死亡에 關한 定期的 支拂金에 對해서는 그者的 寡婦·子에 對해서 額에도 確保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三十八條 第三十四條 및 第三十六條의 紹付는 事故의 全期間에亘해서 支給되지 않으면 아니된다。但 勞動不能에 關
해서는 所得停止의 諸境遇의 最初의 三日間에 對해서는 紹付를 支給할 必要가 없다。

第七編 家族給付

第三十九條 本協定의 本編의 適用을 받을 各會員國은 本編의 諸條에 따라서 被保護者에 對해서 家族給付의 支給을 確保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四十條 適用을 받을 事故는 所定의 子에 對한 扶養義務로 한다。

第四十一條 被保護者は 다음과 같은 者이다。

ㄱ、모든 雇傭者の 五十%以上을 構成하는 所定의 階層의 被用者 또는
ㄴ、모든 住民의 二十%以上을 構成하는 所定의 階層의 經濟的稼動人口 또는
ㄷ、모든 住民、但 事故期間中에 있어서의 資產이 所定의 限度를 넘지 아니하는 것 또는
ㄹ、第三條에 따라서 行해진 實績이 效力을 가지는 境遇에는 二十人以上을 使用하는 工業的 作業場에 있어서 모든 雇
傭者の 五十%以上을 構成하는 所定의 階層의 雇傭者。

第四十二條 紹付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ㄱ、所定의 資格期間을 滿了한 모든 被保護者에게 賦與되는 定期的 支拂金 또는
ㄴ、子에 對해서 或은 子에 關해서 賦與되는 食糧、衣服、住宅、休日 또는 家事奉仕의 供與 또는

「、」、「 및 」의 組合。

第四十三條 第四十二條의 約定하는 바에 따라 酸出 또는 雇傭에 對해서는 三個月、居住에 對해서는 一年 이 되는 資格期間을 所定의 期間內에 滿了한 被保護者에 對해서 적어도 確保되어야 한다。

第四十四條 第四十二條에 따라서 被保護者에게 賦與되는 紙付의 總額은 다음과 같은率이라야 한다。

「、第六十六條에 定해진 規則에 따라서 決定하는 通常成年男子勞動者の 賃金의 三%에 被保護의 子의 總數를 乘한 것 또는 「、右의 賃金의 一・五%에 모든 住民의 總數를 乘한 것。

第四十五條 紙付가 定期的 支拂金으로써 成立되는 境遇에 紙付는 事故의 全期間에亘해서 支給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八編 出產給付

第四十六條 本協定의 本編의 適用을 받는 各會員國은 本編의 諸條에 따라서 被保護者에 對해서 出產給付의 支給을 確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四十七條 本編의 適用을 받을 事由는 妊娠、分娩、그結果、國內의 法律 및 規則이 定하는 바에 起因하는 所得의 停止로 한다。

第四十八條 被保護者는 다음과 같은者로 한다。

「、所定의 階層의 雇傭者에 屬하는 모든 婦人(但 이와 같은 階層은 모든 雇傭者の 五十%以上을 構成하는 것을 要한 나) 및 出產醫療給付에 對해서는 이와 같은 階層에 屬하는 男子의 妻、또는 「、所定의 階層의 經濟的稼動人口에 屬하는 모든 婦女子(但 이와 같은 階層은 모든 住民의 二十%以上을 構成함을 要한다) 및 出產醫療給付에 對해서는 이와 같은 階層에 屬하는 男子의 妻 또는 「、第三條에 따라서 行해진宣言이 效力を 가지는 境遇에 所定의 階層의 雇傭者에 屬하는 모든 婦女子(但 이와 같은 階層은二十人以上을 使用하는 工業的 作業場에 있어서의 모든 雇傭者の 五十%以上을 構成함을 要한다) 및 出產醫療給

付에 對해서는 이와 같은 階層에 屬하는 男子의 妻。

第四十九條 一 婦娠、分娩 및 그것의 結果에 對해서는 出產醫療給付는 本條의 第二項과 第三項의 醫療로 한다。

二 醫療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을 包含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醫師 또는 資格이 있는 助產婦의 어느 것에 依한 產前、分娩 및 產後의 手當 또는
」、必要한 境遇의 入院

三 本條 第二項의 醫療는 保護를 받을 婦女子의 健康 및 그들의 勞動能力과 個人的的需要를 充足시키는 能力を維持、回復、 또는 改善하기 위하여 試與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四 出產醫療給付를 管理하는 機關 또는 官廳은 公共의 機關 또는 公共의 機關이 承認하는 다른 團體가 供與하는 一

般保健施設의 保護를 받을 婦女子에 依한 利用을 適當하다고 生覺되는 方法으로서 嘉獎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五十條 娃娠 및 分娩、 그것의 結果에 起因하는 所得의 停止에 對한 給付는 第六十五條의 要件、 또는 第六十六條의 要件의 어느 것에 合致하는 方法으로서 計算되는 定期的 支拂金이라야 한다。 定期的 支拂金의 額은 事故의 期間中、 이 것의 要件에 合致하는 支拂金의 平均率을 條件으로 하여서 變更할 수 있다。

第五十一條 第四十九條 및 第五十條의 給付는 適用을 받을 事故가 發生한 境遇에 滥用을 避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資格期間을 滿한 保護를 받을 階層에 屬하는 婦女子에 對해서 적어도 確保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五十二條 第四十九條 및 第五十條의 給付는 事故의 全期間에 亘해서 支給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但 定期的 支拂金은 十二週로 制限할 수 있지만 國內의 法律 또는 規則이 十二週以上の 休業期間을 要求하거나 또는 許可하고 있는 境遇를 除外한다(이 境遇에는 定期的 支拂金은 十二週以上的 休業期間에 達하고 있지 아니한 期間으로 制限할 수 없다)。

第五十三條 本協定의 本編의 適用을 받을 各會員國은 本編의 諸條에 따라 被保護者에 對해서 廢疾給付의 支給을 確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九編 廢疾給付

第五十四條 本條의 適用을 받을 事故는 所定의 有償의 活動의 不能으로 한다. 但 이 不能은 永續의 일것이 될 蓋然性이 있던가 또는 疾病給付의 終了後에도 持續함을 要한다.

第五十五條

被保護者は 다음과 같은者이다.

- 「、 모든 雇傭者の 五十%以上을 構成하는 所定의 階層의 雇傭者 또는 모든 住民의 二十%以上을 構成하는 所定의 階層의 經濟的 稼動人口 또는 모든 住民但、 事故期間中の 그의 資產이 第六十七條의 要件에 合致하는 方法으로서 定해진 限度를 넘지 아니하 는者 또는

己、 第三條에 따라서 行해진 宣誓이 效力を 가지는 境遇에 二十人以上을 使用하는 工業의 作業場에 있어서 모든 雇傭 者의 五十%以上을 構成하는 所定의 階層의 雇傭者。

第五十六條

給付는 다음과 같은方法으로 計算되는 定期的 支拂金으로 한다.

- 「、 雇傭者の 階層 또는 經濟的 稼動人口의 階層이 保護되는 境遇에 第六十五條의 要件 또는 第六十六條의 要件의 어느 것에 合致하는 方法

「、 事故期間中の 資產이 所定의 限度를 넘지 아니하는 모든 住民이 保護되는 境遇에는 第六十七條의 要件에 合致하는 方法。

第五十七條

一 第五十六條의 給付는 適用을 받을 事故가 發生한 境遇에 적어도 다음의 者에 對해서 確保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 醫出 또는 雇傭에 對해서는 十五年、 居住에 對해서는 十年으로 되는 資格期間을 事故發生前에 所定의 規則에

따라서 滿了한 被保護者 또는

「、 經濟的 活動에 從事하는 모든 사람이 原則의 으로 保護되는 境遇에는 醫出金에 對해서 三年의 資格期間을 滿了한 被保護者、 이와 같은 境遇에 그 者에 關해서 그 者가 營動年齡에 있는 동안 所定의 年平均回數의 醫出金이 支拂되 었음을 要한다.

二 第一項의 給付가 酸出 또는 雇傭에 關한 最少期間의 滿了을 條件으로 하는 境遇에 減額給付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者에게 對해서 確保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一、酸出 또는 雇傭에 對한 五年의 資格期間을 事故發生前에 所定의 規則에 따라서 滿了한 被保護者 또는 二、經濟的活動에 從事하는 모든 사람이 原則的に 保護되어 있는 境遇에, 酸出金에 關한 三年의 資格期間을 滿了한 被保護者 이境遇에 그 者에 對해서 그 者가 勞動年齡에 있던 동안 本條의 第一項」에 依해서 定해진 年平均回數의 半分의 回數의 酸出金이 支拂되었음을 必要로 한다.

三 第十一編의 要件에 따라서 關係標準受給者에 關한 該編의 附表에掲載된 百分率보다 十만 %는 百分率로 計算된 給付가 酸出、雇傭 또는 居住에 關한 五年을 所定의 規則에 따라서 滿了한 被保護者에 對해서 적어도 確保되는 境遇에 는 本條 第一項의 要件를 충足한 것으로 看做한다.

四 減算한 百分率에 對應하는 年金에 關한 資格期間이 酸出 또는 雇傭에 對한 五年을 넘지만 酸出 또는 雇傭에 對한 五年에 達하지 않는 境遇에는 第十一編의 附表에掲載된 百分率에 對해서 比例的 減算을 行할 수 있다。 減額한 年金은 本條의 第二項에 따라서 支拂된다.

第五十八條 第五十六條 및 第五十七條의 給付는 事故의 全期間에亘해서 또는 老齡年金이 支拂될 때까지 支給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十編 遺族給付

第五十九條 本協定의 本編의 適用을 받는 各會員國은 本編의 諸條에 따라서 被保護者에 對해서 遺族給付를 確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六十條 一 本條의 適用을 받는 事故는 扶養者の 死亡의 結果로서 寡婦 또는 子가 享有할 扶養의 損失로 한다。 但 寡婦가 給付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寡婦가 自活할 수 없다는 것을 國內의 法律 또는 法令에 따라서 推定되는 것을 條件으로 한다。

二 國內의 法律 또는 法令에 따라서 給付를 받을 資格이 있는 者가 所定의 有償的 活動에 從事하고 있는 境遇에 그 給付를 停止시킬 수 있다는 項旨, 또는 給付가 總出制의 境遇에 受益者の 所得이 所定額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給付를 減額할 수 있으며 給付가 無總出制의 境遇에 受益者の 所得或은 受益者の 其他資產 또는 그들의 合計가 所定額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給付를 減額할 수 있다는 項旨를 規定할 수 있다.

第六十一條 被保護者는 다음과 같은 者로 한다.

「所定의 階層의 雇傭者에 屬하는 扶養者の 妻、子(但 이와 같은 階層은 모든 雇傭者の 五十%以上을 構成함을 要한다) 또는

「所定의 階層의 稟動人口에 屬하는 扶養者の 妻、子(但 이와 같은 階層은 모든 住民의 二十%以上을 構成함을 要한다) 또는

「扶養者를 殘失하고 事故期間中の 資產이 第六十七條의 要件에 合致하는 方法으로서 定해진 限度를 넘지 아니하는 모든 住民인 寡婦 및 子、

「第三條에 따라서 行해진宣言이 效力を 가지는 境遇、所定의 階層의 雇傭者에 屬하는 扶養者の 妻 및 子(但 이와 같은 階層은 二十%以上을 使用하는 工業的 作業場에 있어서의 모든 被用者の 五十%以上을 構成함을 要한다)

第六十二條 給付는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計算된 定期의 支拂金으로 한다.

「雇傭者の 階層 또는 稟動人口의 階層이 保護되는 境遇에는 第六十五條의 要件 또는 第六十六條의 要件의 어느 것에 合致하는 方法

「事故期間中の 資產이 所定의 限度를 넘지 아니하는 모든 住民이 保護되는 境遇에는 第六十七條의 要件에 合致하는 方法。

第六十三條 一 第六十二條의 給付는 適用을 받을 事故가 發生한 境遇에 적이도 다음의 者에 對해서 確保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 酒出 또는 雇傭에 對해서는 十五年、居住에 對해서는 十年으로 되는 資格期間을 所定의 規則에 따라서 滿了한

扶養者의 被保護者 또는

「、經濟的活動에從事하는 모든 사람의 妻와 子가原則의으로保護되는境遇、醵出金에對한三年의 資格期間을 滿了한 扶養者の被保護者、이와 같은境遇에 그 扶養者에關해서 그者が勞動年齡이었던 동안所定의 年平均回數의 違出金이 支拂되었음을必要로 한다。

二 第一項의 給付가 違出 또는 履儲에對한最少期間의 滿了를條件으로하고 있는境遇에減額給付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者에게對해서確保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一、醵出 또는 履儲에對한五年의 資格期間을所定의規則에따라서滿了한 扶養者の被保護者 또는

「、經濟的活動에從事하는 모든 사람의妻 및 子가原則의으로保護되는境遇、醵出金에對한三年의 資格期間을 滿了한 扶養者の被保護者、이와 같은境遇에 그 扶養者에關해서 그자가勞動年齡이있었던 동안本條의 第一項」、에따라서定해진 年平均回數의半分의回數의 違出金이 支拂되었음을必要로 한다。

三 第十一編의 要件에따라서關係標準受給者에關한該編의附表에掲載된百分率보다十이적은百分率로서計算된 給付가 違出、履儲 또는 居住에關한것의五年을所定의規則에따라서滿了한 扶養者の被保護者에對해서 적어도 確保되는境遇에本條의 第二項의 要件이充足된것으로看做한다。

四 減算한百分率에對應하는 給付에關한 資格期間이 違出 또는 履儲에關한것의五年을 넘지만 違出 또는 履儲에關한것의十五년에達하지 못하는境遇에는 第十一編에掲載된百分率에對해서比例的減算을行할수가 있다。減額된 給付는本條의 第二項에따라서支拂된다。

五 自活할수없다고推定되는子없는寡婦가遺族給付를 받을權利를 가지기위해서는婚姻에對한最少期間을要件으로 삼을수 있다。

第六十四條 第六十二條 및第六十三條의 給付는 事故의 全期間에 亘해서支拂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十一編 定期의 支拂金의 計算

第六十五條 一 本條의適用을 받을定期의 支拂金에對해서 事故의期間中 支拂되는家族手當의額을 加한 給付率

은當該事故에 關해서 本編의 附表에掲載된 標準受給者에 對해서 受給者 또는 그의 扶養者の 從前의 所得과 標準受給者와 同一한 家族의 責任을 가지는 被保護者에게 支拂되는 家族手當의 額과의 合計에 對한 것의 附表에掲載된 百分率에 依해서도 達할 수 있는 率이 아니면 아니된다.

二 受給者 또는 그의 扶養者の 從前의 所得은 所定의 規則에 따라서 計算된다。被保護者 또는 그의 扶養者를 그의 所得에 基礎를 두어서 階層으로 分類하는 境遇에는 이와 같은 者의 從前의 所得은 그者가 屬한 階層의 基本所得에 依해서 計算할 수 있다。

三 紿付의 率 또는 紿付를 計算함에 있어서 考慮되는所得에 對해서는 最大限度를 定할 수 있다。但이 最大限度는 受益者 또는 그의 扶養者の 從前의 所得이 男子熟練工의 貨金과 同等하거나 또는 이것 보다 낮은 境遇에는 本條의 第一項의 規定에 따르는 方法으로써 定한다。

四 受給者 또는 그의 扶養者の 從前의 所得、 男子熟練工의 貨金、 紿付 및 家族手當은 同一한 時量 基準으로 해서 計算한다。

五 其他의 受給者에 對해서는 紿付는 標準受益者에 對한 紿付와 合理的인 關係를 가지도록 定한다。

六 本條에 있어서 男子熟練工이란 다음과 같은 者를 말한다。

1. 電氣機械類를 除한 機械類의 製造에 從事하는 組立工, 또는 旋盤工 또는

2. 다음 項의 規定에 따라서 選拔된 熟練勞動者的 典型이라 認定된 者 또는

3. 所得이 모든 被保護者の 七十五%의 所得과 同等하거나 또는 그것 보다 큰 者, 該被保護者の 七十五%의 所得은 別途로 定해지는 바에 따라서 一年 또는 그것 보다 짧은 期間을 基準으로 해서 定해진다. 또는

4. 所得이 모든 被保護者の 平均所得의 百二十五%에 達하는 者。

七 前項 1, 에서 熟練勞動者の 典型이라 認定되는 者라 함은 經濟의 活動에 從事하고 當該事故가 發生한 境遇에 保護를 받는 男子, 또는 境遇에 따라서 被保護者の 扶養者の 最大多數를 使用하는 經濟活動의 大分類에 屬해된 者로 한다. 但該大分類는 保護를 받는 者 또는 扶養者の 最大多數를 使用하는 部門에 屬해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國際聯合經濟社會理事會가 一九四八年八月二十七日 第七回會期에서 採擇한 全經濟活動의 國際標準產業分類(本協定의 附錄으로서 揭載함) 또는 隨時 改正을 加하는 該分類를 使用한다。

八 紿付率이 地域에 따라서 變動할 때에는 男子熟練工은 本條의 第六項 및 第七項에 따라서 地域別로 決定할 수 있다。
 九 男子熟練工의 賃金은 生計費手當이 있는 境遇에는 이것을 包含해서 勞動協約에 따라 國內의 法律 또는 規則에 依하여 或은 그에 따라서 또는 慣習에 依하여 定해지는 通常勞動時間에 對한 賃金率을 基準으로 해서 決定된다。
 該賃金率이 地域에 따라서 相違하여 本條 第八項의 應用이 없는 境遇에는 中間賃金率에 依한다。

十 老齡、業務災害(勞動不能의 境遇를 除함)、廢疾 및 扶養者의 死亡에 關한 現行의 定期的 支拂金의 率은所得의 一般水準의相當한 變動이 生計費의相當한 變動에 起因하는 境遇에는 該所得의 一般水準의相當한 變動에 따라서 改正한다。

第六十六條 一 本條의適用을 받는 定期의 支拂金에 對해서는 事故의期間中 支拂될 家族手當의額을 加한 紿付率은當該事故에 關해서 該編의 附表에 揭載된 標準受給者에 對해서 普通成年男子勞動者의 賃金과 標準受給者와同一한 家族의責任을 가지는 被保護者에게 支拂되는 家族手當의額과의合計에 對한 것의 附表에 揭載된 百分率에 적어도 達하는率이 아니면 아니된다。

二 普通成年男子勞動者의 賃金、給付 및 家族手當은同一한 時를 基準으로 해서 計算한다。

三 其他의受給者에 對해서는 紿付는 標準受益者에 對한 給付와 合理의 인關係를 가지도록 定한다。

四 本條에서 普通成年勞動者라 함은 다음과 같은 者를 말한다。

「、電氣機械類를 除한 機械類의 製造에 從事하는 未熟練勞動者의典型이라 認定되는 者 또는
 」、다음項의規定에 依해서 選拔된 未熟練勞動者의典型이라 認定되는 者。

五 前項「에서 未熟練勞動者의典型이라 認定되는 者라 함은 經濟的活動에 從事하여 當該事故가 發生한 境遇에 保護를 받을 男子、 또는 境遇에 따라서 被保護者와 扶養者의最大多數를 使用하는 經濟活動의 大分類에 屬する 者로 한 다。但 該大分類는 保護를 받을 者、 또는 扶養者의最大多數를 使用하는 部門에 屬해있어야 한다。이것을 위하여 國際

聯合經濟社會理事會가 一九四八年八月二十七日 第七回會期에서 採擇한 全經濟活動의 國際標準產業分類(本條約의 附錄으로서 摘載한)、 또는 隨時改正을 加하는 該分類를 使用한다。

六 紿付率이 地域에 따라서 變動할 때에는 普通成年男子勞動者는 本條 第四項 및 第五項에 依해서 地域別로 決定할 수 있다。

七 普通成年男子勞動者의 賃金은 生計費手當이 存在하는 境遇에는 이것을 包含하여 勞動協約에 依해서 國內의 法律 또는 法令에 따라 或은 慣習에 따라 定해지는 通常勞動時間에 對한 賃金率을 基準으로 依해서 決定한다。該賃金率이 地域에 따라 相違하며 本條의 第六項의 適用이 없는 境遇에는 中間賃金率에 依한다。

八 老齡、業務災害(勞動不能의 境遇를 除함)、廢疾 및 扶養者의 死亡에 關한 現行의 定期的 支拂金의 率은所得의 一般水準의 相當한 變動이 生計費의 相當한 變動에 起因하는 境遇에는 該所得의 一般水準의 相當한 變動에 따라서 改正된다。

第六十七條 本條의 適用을 받을 定期的 支拂金에 對해서는

「給付率은 所定의 率、 또는 權限있는 公共機關이 所定의 規則에 따라서 定하는 率에 依해서 決定된다。」

「該率은 受給者の 家族의 其他 資產이 所定의 相當額、 또는 權限있는 公共機關이 所定의 規則에 따라서 定해진 相當額을 넘을 程度까지만 減少할 수 있다。」

二、給付 및 其他資產의 合計는 「」에 摘載된 相當額을 控除한 後 受給者の 家族에게 健康하며 快適한 生活을 保障하는 데 足하는 것이라야 하며 第六十六條의 要件에 따라서 計算한 該當給付以上이 아니면 아니된다。
己、乙의 規定은 關係編에 依해서 支拂되는 紿付의 合計額이 第六十六條의 規定 및 나음 諸條의 規定을 適用해서 얻는 紿付의 合計額을 적어도 三十%만 넘는 境遇에 充足된 것으로 認定한다。

I、第三編 第十五條」、

II、第五編 第二十七條」、
III、第九編 第五十五條」、

■ 第十編 第六十一條」。

第十一編附表 標準受給者에 對한 定期的 支拂金

編 事 故	標 準	受 益 者	百分 率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疾 病	失 業	老 齡	勞 動 不 能	業 務 災 害	廢 業	出 廠	遣 職
妻斗	二子를 가진	男子	四十五								
妻와	二子를 가진	男子	四十五								
年金、年齡의 妻를 가진	男子	四十									
妻斗	二子를 가진	男子	五十								
妻와	二子를 가진	男子	五十								
二子를 가진 寡婦	男子	四十五									
二子를 가진 寡婦	男子	四十									

第六十八條이卜는 韓次上의 規定이므로 省略한다。

- 1 The Social Security Act, 1935, 49 Stat. 620 (1935), 42 U. S. C. c. 7(1940).勿論 一九三五年 以前에도 美國의
 社會保障法叫做社會改良法(Social Reform Act)로 調べ되며 質의의 이로 社會保障制度叫做
 一九三三年의 社會改良法(Social Reform Act)로 依해서 實施되고 有其事。
- 2 社會保障制度의 發展史에 關于서 H. Clarke, Social Legislation, pp. 437-642, 1957.

3. 社會保險의 發展史 Farman & Hal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Throughout the World, U. 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ivision of Research and Statistics, Bureau Report (Washington, D. C., G. P. O., 1949), No. 16; U. 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Major Changes in Social Security Legislation: 1952 (Washington, D. C., G. O. P., 1953), 3d Suppl. to Farman & Hale, op. cit. 參照。一九八一年 『Bismarck』 六 廣範圍의 社會保險案 提示된 후 나아发展하 여 伸張되는 이에따르니 權益權 (Benefit Rights) す 保険料 財政 (Contribution) による 運營하 緩和하는 途로 本래 由各經濟團體 財政經理하 管理行政과의 統合 체제로 運動이 展開된다. 이 問題는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34th Session, Geneva, 1951, Report IV I. Objectives and Minimum Standards of Security, pp. 34-』 (Geneva, I. L. O., 1950) 參照。 여기서 말하는 社會保險은 本來 由 科設保險의 類似한 것이며 特定集團의 融出한 共同基金으로 資格을 具備한 被保險人の 財政狀態

의 無關한 本來 由 特定額의 給付量 支拂하는 制度이다。

4. 公的扶助과 本來 由 保險法 本來 其他法의 保護對象이 되지 아니하는 個人의 集團을 위한 救助策을 말한다. 寫及着 事 程度 公共責任을 強調하 여 數世紀동안의 英國의 經驗이 由 分野의立法로 本 貢獻을 해 왔다. 再言할 必要는 無다. 經濟恐慌으로 因해서 大量失業이 發生한 대對해서 大規模의 由 公共事業을 實施해서 失業者를 吸收한다는 것에 一例이 빠 수 있을 것이다. 救貧制度와 그 것을 母胎로 하여 發展한 公的 扶助制度는 自己의 獨力으로 生活을 維持하는 本가기자 不能한 生活困境者를 保護對象으로 해서 이와같이 者를 救護하기 위한 制度이지만 그것만으로서 本來 由 不充分하기 本來 由 本制度와 一起 社會保險制度가 發達해 數다. 公的扶助(國家扶助)制度의 發展史에 關於

参看 J. Clarke, op. cit. pp. 155, 248, 437, 443, 446-463, 486-503. 參照。

5. 戰殘軍醫遺族과 傷痍軍醫年金法(法律第二五六號, 改正 檢紀四二八六, 五, 二二四, 法律第二十九, 一號)와 同施行令(大統領令第七二七號). 勤勞基準法의 第八章「災害補償」에서 勤勞者가 業務上 負傷 本來 疾病의 慢性境遇의 使用主가 補償한다. 本來 由 仔細한 規定을 두었다. 公務員勞組結成이 由 本來 由 交通部에서 的 檢紀四二九一年十一月一日付 大統領令이 由 交通部災害補償制가 實施되었다고 傳해 진다. 本來 由 國民生命保險法(法律第二六九號, 改正四二八九,

- 1.'大'法律第三七九號)도 社會保障立法의 部門에 屬할것입니다. 그리고 解放以前의 法令이로서 憲法第百條에 依하는
상자도 效力이 있느니와도 做되는 것이므로 西紀一九四四年, 三月一日 制令 第十一號로 公布된 朝鮮救護令과 同日
에 處令 第七十號로서 公布된 同施行令을 들 수 있다. 同令에 援用한것은 朝鮮刑法第二十八章의 「遺棄罪」와 依
用民法 第四編第八章의 「扶養의 罰金」等의 關係法文을 參照하여 確定되는 것입니다. 以나마 朝鮮 法令이 有지난 1945년
것이 實際의 이며 留意해야만 效果를 有하는 手续이 有된다.
- 6 原文의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Convention 102, Convention Concerning Minimum Standards of Social Security, Adopted by the Conference at its Thirty-Fifth Session, Geneva, 28 June 1952는 故정 附註에 有된다.
- 7 以下 國際勞動機構이 表示하기 適切한 I.L.O.의 諸字를 使用하기로 하자.
- 8 甞 안 태아 應向의 國際의 表現이에서 人間의 生存權에 規定한 人權共同宣言 第III條参照.
- 9 From Cradle to Grave for Entire Nation의 最高田懸叫 表現은 云吉威inston (Beveridge)案의 實現된 英國社会保障 一九四一年以後 社會保障制度가 全面의 이며 實施되어 有이다. 佛蘭西스카페 一九四五年以後 社會保障制度가樹立된 것이다.
- Cf. P. Laroque, Réflexions sur le problème social, les édition sociales françaises, 1953.
- 10 Insecurity, P. 3, 1933.
- 11 補助金 補助金' 生活水準의 保証에 關連한 『中近東地域』에 有하는 『朝鮮』의 社會保障의 方法와 内容이 記載된 서부
支那와 資本 資本 計劃。 Preparatory Asiatic Reg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New-Delhi,
1947, Report I: Problems of Social Security (New-Delhi),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47;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Regional Conference for the Near and Middle East, Teheran, April 1951, Report III: Social Security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50).
- 12 I.L.O.憲章의 原文의 International Labour Cod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52는 本章 제49조에 有된다.
- 13 其他 詳細는 I.L.O.의 補助金 補助金 計劃에 記載된 서부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 Reference Handbook,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1951에 參照。 本章 제49조에 計劃에 計劃에 如何의 問議를 有하는 議論을 有한다.

14.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op. cit., pp. 20-23;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irst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o the United Nations, Appendix VIII, pp. 61-85, 85-101.
15. 本協定可 諸國可 離頒‘召約書’署名文書」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Thirty-Fourth Session, Geneva, 1951, Report IV(2): Objectives and Minimum Standards of Social Security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51) 簽署。

〈新編一本大學生教科書〉